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
(김윤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818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4. 8

발 의 자 : 김 윤 · 서왕진 · 최혁진  
남인순 · 김남근 · 김영진  
차규근 · 이주희 · 전진숙  
송재봉 · 염태영 · 박지혜  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비영리민간단체의 자발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·수익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개정에 맞추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법률인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(안 별표 제223호 신설).

참고사항

이 법률안은 김윤의원이 대표발의한 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」(의안번호 제18183호)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,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.



법률 제 호

##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에 제2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연 번	국유재산특례 근거 법률	특례유형	존속기한
223	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11조의2	사용료등의 감면	2031. 12. 31.

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